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흠제 의원 외 23명

나. 의안번호 : 제1595호

다. 제출일자 : 2024. 2. 5.

라. 회부일자 : 2024. 2. 7.

## 2. 제안사유

- 현행 조례는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 운행구간에서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에 부득이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복 정류소 제한을 개별 노선의 특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개별 노선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 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14. ~ 2023. 2. 18.

○ 제출의견 : 1건(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 반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의견 요약〉

- 마을버스조합 이사장 중복정류소 증가 반대('23년 11월 3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마을버스 본연의 역할은 시내버스 연계수단

- '04. 7월 준공영제 시행 시 마을버스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었으나 마을버스 회사가 준공영제 참여를 거부하고 개인사업자로 이익을 향유

· 마을버스는 준공영제 시작인 2004년(1,231대) →

2022년(1,668대) 437대가 증가

- 개인사업자인 마을버스는 적자보전으로 이익을 다 보장받음
- 마을버스 정류소가 늘어나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증가됨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기능을 구분하는 관계법령 취지 훼손 우려

## 라. 관계기관 의견1)

### ○ 제출의견 : 수정가결

- 제2조제2호, 제10조제1항 및 4항 본문의 잘못 준용한 규정의 수정은 동의
-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16.11.)」의 중복정류소 판단 예외 조항에 개별노선의 특수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 안 제10조제4항의 단서조항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 - 중복정류소 판단 예외 기준 >

- ①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보다 선진입한 구간은 중복으로 보지않음. 단, 선진입 사실을 마을버스 운수회사에서 증명하여야 함
- ②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신규도로가 개설되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동시에 투입된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 ③ 중앙차로 개통 등으로 신호체계가 변경되어 회차목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불가피하게 연장 또는 변경될 경우 마을버스 추가운행구간은 중복으로 보지 않음
- ④ 마을버스 노선이 좌회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통과해야(무정차) 하는 정류소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 ⑤ 마을버스 노선이 우회전 직후 마을버스 단독정류소에 정차하는 경우 우회전 직전의 시내버스 정류소에 교통흐름 등을 위해 무정차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 ⑥ 마을버스 회차지점(장소)이 협소하여 교통정체 및 사고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회차방법을 변경할 경우 최단거리로 회차하되, 변경되는 회차경로상의 정류소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 '12.7월 중복정류소 완화(3→4개소) 영향으로 중복정류소  
기준 충족(4개 이하) 노선 대폭 감소 ['12년 5월 : 123개  
(전체의 59%) → '24년 1월 : 72개(전체의 29%)]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노선버스( 시내버스를 말함)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이하 중복정류소)를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의 중복정류소 규정은 '00년 5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sup>2)</sup>되면서 최초 마련되었음

당시 일반노선버스와 경합운행노선의 과도한 증가 등 마을버스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마을버스와 일반노선버스가 겹칠 때 3개까지만 정류소를 함께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버스가 간선버스와 도시철도의 보조 또는 연계수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중복정류소의 개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

2) 서울특별시조례 제3754호, 2000. 5. 20., 제정·시행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

제10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등)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1호가목의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버스정류소를 그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였으며, 조례 제정 당시에 운행중이던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중복정류소 규정 적용을 제외<sup>3)</sup>하였음

- 이후 마을버스가 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교통불편 지역을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각지대 주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노선버스 구간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확대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12년 7월 현행 조례와 같이 중복정류소를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개정<sup>4)</sup>하였음
-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는 총 245개 노선 1,460대가 운행하고 있고, 전체 노선중 173개 노선(70.6%)이 중복정류소 4개를 초과하고 있으며, 9개 이상 노선도 106개(43.3%)로 나타남

**※ 마을버스 중복정류소 노선현황**

연 도	중 복 정류소수	계	3개 이하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이상
'12년	노선수	210	107	16	17	6	7	2	55
5월	비율(%)	100.0	51.0	7.6	8.1	2.9	3.3	1.0	26.2
'24년	노선수	245	44	28	16	16	20	15	106
1월	비율(%)	100.0	18.0	11.4	6.5	6.5	8.2	6.1	43.3

주 : 서울시 자료(버스관리과-7747호, '12.5.14 등)

3)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 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p3

4) 서울특별시조례 제5336호, 2012. 7. 30., 일부개정·시행

- '12년 조례 개정 당시와 '24년 현재 마을버스 중복정류소 현황을 살펴보면 중복정류소가 4개인 마을버스 노선수는 '12년 16개에서 '24년 28개로 증가하였으며, 3개 이하 노선수는 감소한 반면 6개 이상 노선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서울시가 마을버스 중복정류소 수를 4개소 이내로 제한했음에도 중복정류소가 6개 이상인 노선이 증가한 이유는 ①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가 '12년에 비해 576개 증가했고(표 2 참고), ② 지선 및 전체 시내버스의 노선당 운행거리가 소폭 증가했으며(표 3 참고), ③ 시내버스가 마을버스에 비해 노선조정 건수가 많다는 점(표 4참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표2 : 시내버스 정류소 현황

(단위:개소)

연 도	계	가로변	중 앙
'12년	6,054	5,712	342
'23년	6,630	6,230	400
증 감	576	518	58

주 : 서울시 자료(서울열린 데이터광장 등)

※ 표3 : 시내버스 운행거리

구 분	2012년			2023.11월		
	노선수	총 인가 거리(km)	노선당 인가 거리(km)	노선수	총 인가거리	노선당 인가 거리(km)
지 선	226	6,130	27.1	207	6,040	29.2
전체노선	375	13,531	36.1	384	14,485	37.7

주 :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 표4 : 연도별 시내·마을버스 노선조정 현황

(단위:건수)

구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시내	371	59	38	50	17	50	29	29	16	30	29	24
마을	116	26	17	19	9	3	8	10	7	3	3	11

주 :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는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단서조항을 통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복정류소 4개소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타 시도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운영 관련 조례 현황

관련조례	조례 내용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8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소 및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을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는 4개소 이내의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u>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버스정류소를 추가(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설치할 수 있다.</u>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② 운행노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정류소간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u>지역주민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내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u>

- 경기도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버스정류소를 추가(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마을버스 등록 등의 사무가 각 시·군으로 위임<sup>5)</sup>되어 있어 경기도의 기준이 아닌 각 시·군의 재량으로 조례가 적용되는 상황임
- 또한 인천광역시도 “지역주민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내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부재한 상황임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당초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복정류소를 5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08년 12월 인천광역시장이 중복정류소를 5개소에서 7개소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로 제출하였고,

조례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류소 개소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복정류소 개소수에 대한 규정을 삭제<sup>6)</sup>한 바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단순히 중복정류소 개수만을 제한하여 시내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무 시장·군수에게 위임

6)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08.12.19.)

